

『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11월 26일

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도시환경국장 박 수 원

나. 제안이유

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
업무추진 방법을 개선하고,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근거를
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피해보상 요건, 산정기준, 피해 조사방법 등 변경(안 제4조~제8조)

-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4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1조의3
- 합 의 : 기획예산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강 창 조

- 본 「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 은,
 -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,
 - 피해보상에만 의존하는 사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